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 장 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114
----------	----------

발의연월일 : 2023. 10. 13.

발 의 자 : 정장훈, 박학용, 최동철,
한상욱, 김성한, 김현진,
정재봉, 이충현, 신찬호,
조기만, 김순옥, 박성호,
전철규, 김지수, 홍재희

1. 제안이유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하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강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6조의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의2

나. 협조부서 : 공원녹지과

다. 입법예고 : 2023. 10. 16. ~ 2023. 10.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단체, 기업, 개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목개정 2019. 12. 3.]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2.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3.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11. 30.]